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36
----------	-------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민홍철 · 박상혁 · 김두관
전재수 · 한준호 · 이상헌
박재호 · 조오섭 · 심상정
김승남 · 김성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 세 가지 규정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화환에 대하여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화환의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를 “화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지정절차”를 “지정절차”로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 화훼를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는 회원 중 화훼의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회원 선정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재사용 화환”을 “화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을 “화환을”로,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를 “화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을 “화환의”로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화환의 표시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2.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3. 생화의 재사용 여부
4. 제작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5. 판매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 제목 중 “재사용 화환”을 “화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사용 화환의”를 “화환에”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를 “표시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각각 “표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재사용 화환”을 “화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재사용 화환의”를 “화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재사용 화환”을 “화환”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재사용 화환의”를 “화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사용 화환”을 “화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재사용 화환의”를 각각 “화환의”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를 각각 “표시의무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u>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u></p> <p>② · ③ (생략)</p> <p>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u>신청·지정절차</u>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u>지정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 ----- -----<u>화훼</u>----- ----- ----- ----- -----<u>지정</u>----- <u>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지정</u>----- <u>절차</u>----- -----.</p> <p>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 ----- ----- ----- ----- -----<u>지정</u>----- <u>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 화훼를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는 화원 중 화훼의 품질관리-----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화원 선정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화환을-----

화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화환의 표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한다.

1.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2.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3. 생화의 재사용 여부
4. 제작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5. 판매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화환의-----

-----.

제15조(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화환에-----

표시의무자-----

-----.

1. 표시-----

2. 표시-----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

제16조(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환-----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 ③ (생략)

-----시장·군수·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

-----.

1. -----화환에-----
2. -----화환-----
3. -----화환의-----
-----표시의무자
4. -----화환의-----표시의무자

② · ③ (현행과 같음)